

국내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정용우**, 김판진***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국내중소기업들의 성장·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정부의 지원제도 전반에 관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실현시키는데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연구의 문헌고찰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고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의 경영자들과의 면담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실질적 지원방법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최종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 중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 조세지원정책, 그리고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중소기업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들을 살펴보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역의 균형발전, 고용기회 창출, 경제력 집중도의 완화 등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의 부재, 소극적인 사회참여도 등 부정적인 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중소기업 스스로도 자신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민경제, 특히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성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부나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깊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 한다면 선진국 진입을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중소기업, 정부지원정책

I. 서론

2007년 말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기

* 본 연구는 유통과학연구 제7권 제4호에 게재승인이 취소·보류되어서, 학회 규정에 준하여 추가적으로 논문을 보완 및 재정리함.

** (주)현대이앤지 대표이사, 주저자

*** 초당대학교 기업경영학과 교수, 교신저자

E-mail: pjkim@chodang.ac.kr

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은 침체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쳐 결국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은 낮게 평가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이와 같은 3가지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국내중소기업들의 성장·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정부의 지원제도 전반에 관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연구의 문헌고찰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고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의 경영자들과의 면담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실질적 지원방법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최종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중소기업의 정의 및 유형

1) 국내 중소기업의 법적정의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법률은 [중소기업기본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이 1966년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 12월 6일 제정된 이후, 1976년, 1978년, 1982년, 1993년, 1995년(전문개정), 1997년, 1998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특히, 1982년 이전에는 소기업과 중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묶어서 제조업, 광업 및 운송업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자산총액 5억 원을 기준으로 양자택일하여 어느 한 요건만이라도 충족되면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왔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소기업과 중기업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2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2007년 4월 11일 [중소기업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단순화, 확대 및 신설, 완화되었다. 시행령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 확충

을 위하여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고, 개정법령의 주요요지는 중소기업 제외기준의 보완, 자본금 규모기준의 산정방법 개선, 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완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강화를 담고 있다.

중소기업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정부개정 2007. 4. 11 법률 제 8360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가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21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자의 범위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이하 기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 업종의 특성, 상시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의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이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며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4항에서는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고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2) 국내 중소기업의 범위설정 기준과 의미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적 배려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기업이 어떤 분류에 속하느냐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책의 지원폭이나 혜택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정의는 명확한 법률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범위설정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양적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설정은 종업원 수, 자산액, 생산액, 부가가치액, 매출액 등과 같이 양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 중소기업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도시와 지방, 사업의 종류, 경제발전단계의 시대적 차이에 의해 기준이 변경될 수 있는 유동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질적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설정은 중소기업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을 독립성, 독과점, 집중도, 소유형태, 경영형태 등에 의해 범위 구분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설정 역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양적 및 질적 기준은 이를 설정하는 목적과 그 나라의 경제행태와 국가 내에서 기업의 위상에 따라 국가와 업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표 1>참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적합하고,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이 (<표 2>참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과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금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하고 있다.

<표 1> 중소기업 범위기준

업종	범 위 기 준
제조업	• 상시종업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종업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대형종합소매업, 호텔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업	• 상시종업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대형종합소매업, 호텔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업	• 상시종업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도매 및 상품 중개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연사업, 뉴스제공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기타 모든 업종	•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주: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 관련내용임
연구자 정리

<표 2>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독립성 기준	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2005년 3월 31일까지
•제3조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제외 대상기업”이라한다)이 아닐 것	2005년 4월1일 부터 고시

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호 관련내용임
연구자정리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범위의 적용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대인사

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바 관계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사업자나 법인, 단체는 중소기업 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중소기업의 유형

1) 전통공업용 중소기업

전통적인 상품 생산을 전문분야로 하는 전통공업형 중소기업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은 업종, 지역, 규모 면에서 소규모 생산 위주로 경영활동을 하며,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이나 지역의 토속제품과 같은 전통적인 최종소비재의 공급을 담당하는 기업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이들 중소기업의 특징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기본으로 하며, 가족중심의 노동집약적인 상품의 생산 및 공급을 전담한다.

2) 근대공업형 중소기업

대기업과의 하도급관계를 통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제1차 부품이나 제2차 부품의 생산과 및 공급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주로 3D 업종 ; 어렵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으로 분류되는 생산 활동을 한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주물, 도금, 프레스, 성형 사출기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정보통신기기, 반도체장비, 기계부품 등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기치이(힘든), 기타 나이(더러운), 기켄(위험)산업이라고 비하하면서 그들을 3K업종이라고 불렀다.

문제는 3D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한국인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일하기를 매우 꺼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들이 3D업종 근무를 기피하면서, 이와 같은 기초산업분야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차지하고 있어 이들 분야의 산업 공동화현상은 갈수록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3) 벤처비즈니스형 중소기업

벤처비즈니스형 중소기업이란 고부가가치형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발상과 아이디어로 소비자들의 잠재의식이나 수요를 이끌어내는 벤처비즈니스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중소기업은 대부분 B2B나 B2C와 같은 인터넷 비즈니스나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도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있는 기업형태이다. 특히, 이러한 중소기업은 최고경영자의 마인드가 미래지향적이며, 경영 또한 매우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경향을 띠는 특성을 갖는다.

3.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1)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청(SBA)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미국의 중소기업정책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정책, 독점금지정책과 정부조달정책, 중소기업 지도정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청이 금융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특징인데, 중소기업청 용자는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없

거나 개인적 자산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용자방식은 ① 전액을 중소기업청이 용자하는 직접용자, ② 은행과 공동으로 용자하는 협조용자, ③ 은행이 전액을 용자하고 중소기업청이 보증하는 보증용자 등이 있다. 용자의 주된 내용은 통상기업용자, 경제기호용자, 개발공사용자, 소수인종기업용자, 이전기업용자, 재해용자 등이 있다.

(2) 독점금지정책과 정부조달정책

독점금지정책은 독점을 금지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막고 대기업의 압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시책이다.

정부조달정책은 정부조달에서 점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발주를 증대하도록 독려하는 정책이다.

(3) 중소기업 지도정책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도정책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청 전문가들이 개별 중소기업에 대해 조언 및 경영진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은 주로 중소기업청 퇴직자 가운데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기술, 마케팅, 재무 등 경영전반에 대한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조세, 경영 및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인프라 구축 등 양적·질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업종, 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균형 있는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은 규제완화, 규제집행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공정성 보장, 조세부담 완화, 의료비용 부담 최소화, 인터넷과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연방정부부의 접근성 강화, 연방정부계약의 공개 및 공정성 확보 등이 있다.

둘째, 공정한 경영여건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공가능성 증대를 위한 시책으로는 창업 중소기업 확대 및 성공지원과 기존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등이 있다.

셋째, 재해로부터의 사업복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는 시기적절한 피해기업 복구와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센터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중소기업청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시책은 다음과 같다. ①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업무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분명한 목적, 효과적 전략, 운영지원 시스템 등 마련한다. ② 고객수요에 맞는 지원제도를 시행할 숙련된 인재의 채용 및 배치한다. ③ 효율적인 재정관리 시스템을 통한 지원한다. ④ 정보 및 관련 기술의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 ⑤ 정부조달 및 계약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일본은 1999년 중소기업기본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정책의 기본이념을 '보호·육성'에서 '육성·경쟁'으로 전면 전환하고 다양한 양적·질적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책 대상의 중심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제조업에서 상업, 유통업, 서비스 분야로, 도시지역과 중기업 중심에서 지방기업 및 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이 개별기업에서 출발, 업종별, 부문별,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이 후 일본의 2000년대 중소기업정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경영혁신 추진, ② 창업촉진, ③ 신기술개발연구, 인재확보 및 자금조달의 원활화 등 창조적 사업활동 추진, ④ 경영방법 개선, ⑤ 교류, 연계 및 공동화 추진, ⑥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의 유기적 연계

및 영위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 ⑦ 상점가 및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의 정비 등 상업 집적 활성화, ⑧ 종업원 복지향상 및 중소기업 노동력 확보, ⑨ 하청대금 지불지연 방지, 거래조건 명확화 등 중소기업에 관한 거래의 적정화, ⑩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 ⑪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한 경영안정 및 사업전환, 중소기업자 이외의 자에 의한 부당 이익 침해 방지, 연쇄도산 방지, 사업재건, 폐업, 소규모 기업에 관계된 공제제도 정비 등 경제적·사회적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원활화, ⑫ 중소기업의 자금 원활화 및 자기 자본의 충실, ⑬ 소기업에 대한 배려 등

4. 선행연구의 검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현욱(2004)은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장형규(2001)는 한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은성(2002)은 21세기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해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그 해답을 제시하였다. 정호진(2002)은 글로벌시대에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의 확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관련한 연구를, 조장현(2001)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특성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 강동수(2004)는 중소기업의 부실현황 및 구조조정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강욱현(1994)은 중소기업에 대한 현행 법인세가 실제로 대기업에 비하여 얼마만큼의 법인세 혜택을 중소기업에 부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한 후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권순철(1996)은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장법인, 장외등록법인, 외부 회계사 대상 법인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중소기업과 일반기업간의 조세부담율의 비교를 통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권순철·권순창(1993)은 우리나라 증권거래서 상장법인들의 1988년에서 1992년 사이의 유효법인세율을 측정함으로써 규모별 실질 세부담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고성삼(2000)은 연구에서 중소기업 세제, 세정의 합리적 방향에 관한 의견조사 분석의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액, 기업형태, 종업원 수 등의 기업규모에 따른 차이가 복잡성을 이유로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노현섭(1993)은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직접감면으로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간접감면으로 준비금과 특별상각에 대한 개요와 변천과정을 조사하였다. 정미정(1996)은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와 이용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지원세제별 이용도 실태를 분석하고 중소기업이 조세지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를 연구하였으며, 하혜정(1994)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련하여, 그리고 안숙찬(1996)은 우리나라 법인세제 하에서 개별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차이가 기업특성이나 조세지원의 혜택정도에 의해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지원과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노현섭(1993), 정문현·노현섭(1994), 이규복(1995), 김용훈(1996), 전규안(1997), 송기남(1998)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아닌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들만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어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중소기업

업 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인 분석에 의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5. 국내 중소기업 현황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말 현재 사업체수의 약 99.9%, 고용의 약 88.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용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용비중은 약 10년 전에 비해 8.6%나 상승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국민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용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창출자로서의 중소기업 역할은 특히 1997년 이후 외환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대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을 감소시킨 반면 중소기업은 이를 흡수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였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에 의한 고용증대는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정부도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에게도 관심과 배려, 그리고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제1의 고용창출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확대되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성장에 높은 기여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양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질적인 성장부문에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업규모 간에 생산성 격차의 심화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영세적이고 소규모업체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세적이고 소규모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저생산성에 의한 낮은 수익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지난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의 증가에 비하여 생산액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하여 2000년대 중·후반 생산은 약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영세화는 규모가 큰 업체의 수가 줄어들고 대신 규모가 작은 업체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제조업 규모별 업체수를 살펴보면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100인 이상의 중규모 중소기업의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인 이상의 소기업은 1980년 말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정체하고 있어 제조업의 업체 수 증가는 주로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조업 규모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종사자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기업도 종사자 수를 줄이고 있다. 반면, 영세사업장의 증가와 함께 20인 이하의 종사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영세화 추이는 1980년 대 말 이후 대기업과 중기업의 빠른 구조전환에 따른 고용감축에 그 원인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렇게 1980년대 말 이후 대기업과 중규모 기업에서 고용이 방출되고 대신 영세 소기업의 업체 수와 함께 종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질적인 고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 대비 노동생산성은 1980년대 70% 초반 대까지 대기업

과의 격차를 줄였으나 이후 격차가 확대되며 현재에는 70%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임금수준도 1980년대 대기업의 90% 이상의 수준에 있었으나 1990년대에는 70~80%,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70%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

<표 3> 중소기업경영환경 특징

(기준 : 2005년)

중소기업 경영환경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교하여 낮은 생산성- 49.5% • 중소기업의 규모도 영세화해 가는 추세임.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교하여 낮은 임금을 지급하나 경영에 대한 임금 압박은 심화됨. - 대기업임금수준 대비 70%이하 • 전문 인력 포함하여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함.
--------------------	--

주 : 연구자 정리

1) 국내 중소기업의 일반현황

2005년 기준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3,002천개로 총사업체의 99.9%, 종사자수는 10,772천명으로 총고용의 88.1%, 수출액은 921억 달러로 총수출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추이

(단위: 천개, 천명, 백만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업체수	전체	2,872	2,953	3,004	3,003	3,006
	중소기업	2,862	2,948	2,999	2,998	3,002
	비중	99.7	99.8	99.8	99.8	99.9
종사자수	전체	11,461	11,975	12,041	12,036	12,222
	중소기업	9,734	10,385	10,475	10,415	10,772
	비중	84.9	86.7	87.0	86.5	88.1
수출액	전체	150,439	162,471	193,817	253,845	284,419
	중소기업	64,600	68,308	81,699	90,385	92,128
	비중	42.9	42.0	42.2	35.6	32.4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7년 중소기업현황'(2007)

<표 5> 중소 제조기업의 연도별 비중 추이

(단위: 개, 천명, 천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업체수	전체	105,088	109,489	111,363	112,454	116,303
	제조기업	104,406	108,819	110,691	111,759	115,650
	중소	99.4	99.4	99.4	99.4	99.4
	비중					
종사자수	전체	2,627	2,675	2,717	2,780	2,846
	제조기업	1,991	2,058	2,090	2,105	2,169
	중소	75.8	76.9	76.9	75.5	76.2
	비중					
생산액	전체	5,751	6,283	6,721	7,890	8,457
	제조기업	2,823	3,190	3,402	3,835	4,188
	중소	49.1	50.8	50.6	48.6	49.5
	비중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7년 중소기업현황'(2007)

2) 중소기업의 규모별 현황

2005년 기준 소기업(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50인 미만, 기타는 10인 미만)은 사업체수 기준 96.8%, 종사자수 기준 6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업(중소기업 제외)은 사업체수 기준 3.0%, 종사자수 기준 25.1%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 천개, 천명, %)

구 분	전 체		중소기업						대기업	
			소기업		중기업		소 계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사업체수	3,003 (100.0)	3,006 (100.0)	2,913 (97.0)	2,910 (96.8)	85 (2.8)	92 (3.0)	2,998 (99.8)	3,002 (99.9)	5.0 (0.2)	4.2 (0.1)
종사자수	12,036 (100.0)	12,222 (100.0)	7,602 (63.2)	7,708 (63.1)	2,813 (23.4)	3,063 (25.1)	10,415 (86.5)	10,772 (88.1)	1,621 (13.5)	1,451 (11.9)

주 : ()안은 전체 기업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7년 중소기업현황'(2007)

3) 중소기업의 지역별 현황

중소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사업체수의 46.8%(1,404천개), 전체 종사자수의 50.4%(5,252천명)를 차지하여 수도권 집중현상이 여전한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비중은 영남권 28.4%, 호남권 10.4%, 중부권 9.5%, 지역별 중소기업 종사자수 비중이 영남권 27.6%, 호남권 9.0%, 중부권 9.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편중현상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7> 지역별 중소기업 변화 추이

구 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001	2002	2003	2004	2001	2002	2003	2004
수도권	45.8	46.2	46.7	46.8	50.1	50.0	50.2	50.4
영남권	28.8	28.8	28.5	28.4	27.6	27.7	27.6	27.6
호남권	10.7	10.6	10.4	10.4	9.2	9.2	9.0	9.0
중부권	9.8	9.6	9.6	9.5	9.1	9.1	9.1	9.1
기타(강원, 제주)	4.9	4.8	4.8	4.9	4.0	4.0	4.0	3.9

자료 : 통계청, '2004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2005)

6.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1) 중소기업 지원의 변화과정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3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오고 있다.

(1) 제1단계

1968년 상공부 안에 중소기업국이 신설되고 지난 1979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중소기업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르는 2단계 지원체계가 구성되었으며, 상공부의 중소기업국은 중소기업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었다.

(2) 제2단계

1996년 2월 중소기업청이 통상산업부의 외청으로 신설되고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방사무소가 신설된 시기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체계는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정책관실, 중소기업청,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르는 3단계 조직으로 재구성되었다.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정책관실은 종전과 같은 중소기업정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조직 임무가 주어졌다.

(3) 제3단계

199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되고 과거 통상산업부에 속해있던 중소기업정책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 시기이다. 중소기업 특별위원회는 관계 부처 간 정책조정 및 협의를 원활히 하고 중소기업정책을 입안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정책을 집행하는 구조로 지원체계가 재구성 되었다.

이러한 지원체계의 변화과정 가운데 지방중소기업청이 설립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정책 수립의 기능을 갖게 됨으로서 보다 중소기업의 현실에 가까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자금, 기술, 인력, 판로/수출, 정보화 등 다방면에서 포괄적인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및 수출 증대 등 중소기업의 외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의의와 성격

(1)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념

중소기업지원정책(Support Policy for the Small Medium Enterprise)에 관한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중소기업정책과의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정책이란 국가의 바람직한 산업구조를 이룩하려 함에 있어서 정부가 중소기업 분야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목적적인 정책수단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 할 것이다.

2007년 말 우리나라 전 산업 중소기업체 수는 약 99.9%, 종사자수는 약 88.3%인데 비해 생산액은 50%에 못 미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즉, 0.2%의 대기업이 50%이상의 생산액을 차지하는 구조를 가진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구조를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정책은 대기업과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대기업과 동등한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며 더 나가 밀려드는 외국 기업과 동등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일반적인 특성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중소기업정책과 마찬가지로 국가정책의 한 분야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책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지원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자연적으로 정치성을 띠게 되고,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성 있는 정치력이 내포된다는 점에서 사기업의 경영일반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 상이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정책과 같다.

둘째, 중소기업자가 특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라도 이를 문제로서 인지하는 기관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당면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셋째,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결정이 있는 그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뚜렷하여야 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만약 특정분야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경우 국가차원에서 경영에 필요한 자본이나 기술 및 경영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지원과 같은 정책적 배려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소기업의 문제가 어느 특정의 경영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경제나 서민경제에 직접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원정책을 통하여 특혜를 주거나 그 이상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지원정책은 그 나라의 정치 및 경제발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즉, 이것은 중소기업정책은 각 나라의 정치적 및 경제적인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3)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목표와 유형

(1)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목표

정부에 의하여 중소기업문제가 해결해야할 심각한 문제로서 인식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한 정책목표가 설정된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규모, 업종, 사업형태, 지역별 분포 등의 면에서 불균질적이고 다원적인 기업군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한 매우 다양하고 다원화되어 나타난다. 한편,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소기업지원정책도 그 성격과 국가발전단계에 따라 다르다.

(2)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유형

① 기술개발 관련 지원정책

기술개발 관련 지원정책은 1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신기술인증제도(NET마크)'를 제외한 16개 세부사업을 중소기업청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다.

② 기타 무역구제 및 은행 관련 지원정책

기타 무역구제 및 은행 관련 지원정책은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무역구제제도'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주관하는 금융상품이 있다.

③ 벤처기업 관련 지원정책, 보증 및 보험관련 지원정책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정책은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중소기업청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다.

④ 보증 및 보험관련 지원정책

보증 및 보험관련 지원정책은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중소

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서 발급 제도,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서 발급제도,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 발생 사업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주관하는 매출채권보험 지원, 어음보험 지원 사업이 있다.

⑤ 세제지원정책, 소기업 및 여성기업 집중지원정책

세제지원정책은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첫째,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세제지원(국세)사업과 둘째,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세제지원(지방세)사업과 셋째,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벤처기업 세제지원사업, 엔젤에 대한 세제감면사업이 있다. 그 핵심 내용은 창업지원, 투자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지원, 사업 안정지원, 구조조정지원, 지방이전 지원, 기타 세제지원을 담고 있다.

⑥ 소기업 및 여성기업 집중지원정책

소기업 및 여성기업 지원정책은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모든 세부 사업을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기업 지원사업과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 소기업확인서 발급(법인등기용) 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 가장을 지원하는 여성 가장 창업자금지원사업, 여성특화창업센터 운영사업, 도전 여성스타기업, 자가브랜드를 보유한 여성기업을 위한 여성 기업제품 T-Commerce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⑦ 수출관련 지원정책, 직간접 인력지원정책

수출관련 지원정책은 3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세부사업으로는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운영 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민간해외지원센터 지원사업,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중진공 인터넷 중소기업관(수출지원) 운영사업,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사업, 벤처기업 환위험관리 지원사업, KOTRA 해외 시장조사대행 서비스사업, KOTRA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서비스사업, KOTRA 해외박람회(전시회) 참가지원사업, KOTRA 수출상품 카탈로그 발간 및 제작지원사업, KOTRA 아카데미 교육연수 프로그램 사업이 있고, 수출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보험 제도사업, 수입자 신용조사 제도사업,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서비스사업, 수출신용보증서의 일반금융기관 수탁 발급사업, 부품, 소재 신뢰성보험 제도사업과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무역기금용자지원사업, 무역서비스 할인클럽 운영사업, 무역실무상담 서비스, 수출상품 온라인 홍보서비스 지원사업, 해외지사(사무소) 설치인증 추천사업, 영세업체 수출신고지원사업, 무역온인 할인서비스 지원(RADIS)사업, APEC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사업, 수입규제대응자금 지원사업, e-무역상사 운영사업이 있고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환급 및 감면제도 운영으로 수출업계 지원 사업이 있다.

⑧ 직간접 인력 지원정책

직·간접 인력지원정책은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지원내용은 인력지원과 그에 관련된 지원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다시 주관기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세부사업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우대지원, 노사협력을 위한 보조금지원, 중소기업의 인력 활용지원, 구조조정에 따른 장려금 등 보조금지원사업이 있다.

둘째, 대기업 퇴직인력중계센터에서 주관하는 대기업 퇴직 전문 인력 활용 중소기업 경영자문(K-SCORE)사업이 있다.

셋째,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중활)사업,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국민주택 우선공급, 기업 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지원 사업이 있고,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청년채용패키지 사업이 있다.

넷째, 한국부품소재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 사업(인력, 장비)이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한 연구인력지원 사업,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이 있다.

다섯째,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산재예방시설 보조금 지원사업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외국인력 활용(고용허가제)과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공사에서 주관하는 IT협력단 파견 지원사업 등이 있다.

⑨ 자금 관련 지원정책

자금지원 정책은 2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주관기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세부사업으로 보건의료 기술연구개발(R&D)사업이 있고, 한국발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특허기술 평가지원, 중소기업 우수발명에 대한 시작품 제작지원, 국제출원비용 지원제도가 있으며, 한국과학재단에서 주관하는 과학 기술진흥기금 연구개발 사업이 있다.

둘째,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출원, 등록료 등 특허수수료 감면 사업이 있다.

셋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주관하는 공제사업기금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벤처창업자금,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농공단지 입주기업지원사업이 있다.

넷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정보통신 우수신기술 지정 및 지원사업, IT설비투자확대 지원사업,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융자 사업, 부품소재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부품, 소재 기술개발사업,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사업, 그리고 기타 각 기관에서 주관하는 산업기반금융자사업 등이 있다.

⑩ 정보화 관련 지원정책

정보화지원 정책은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주관기관별로 분류하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세부사업으로 정보화경영체제 구축지원사업, 정보화 혁신 전문기업(TIMPS)을 통한 정보화 일괄지원사업, 중소기업 재직자 정보화교육 지원사업, 불법 기술유출 방지사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산업정보화 기반구축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생산정보화구축 지원사업 등이 있다.

⑪ 판로 및 제품 인증제도 관련정책

판로지원 정책은 1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주관기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하는 세부사업으로 NEP(신기술 인증 제품)인증 지원사업, GR인증마크 사업이 있다.

둘째,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우수제품선정지원(구매, 마케팅 등) 제도, 비축원자재의 안정적 판매 공급사업과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사업, 대기업 채널활용 중소기업 우수상품 판로지원, CJ홈쇼핑 채널활용 중소기업 우수상품 판로 지원, 중소기업 무료 홍보 지원사업, 2006년도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 제로물책임(PL) 제도 대응지원, 성능인증 지원제도, 우수 중소, 벤처기업 "G마켓" 입점지원을 통한 판로지원, 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GQ)인증 인증제도가 있다.

셋째,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특허법률구조사업이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우수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e-marketplace), 우수발명 우수구매추천 제도가 있고, 한국일보에서 주관하는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지원(시상, 홍보) 사업 등이 있다.

(3)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기능

① 고용 안정화 및 고용 증대의 역할

중소기업이 성장하므로써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고용창출과 안정 일 것이다.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약 130여개 중소기업지원정책 중 인력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이 16개, 자금 관련 지원정책이 22개, 수출관련 지원정책이 31개, 창업관련정책이 6개 등으로써 나타나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주된 목적은 사업확장 및 경영안정을 도와 고용안정화 및 고용증대 효과가 있게 하는 것이다.

② 기술 개발 경쟁의 촉진

기술은 있으나 개발비용의 부족으로 신기술 개발을 포기하는 신 기술형 중소기업에게 직·간접적인 자금과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기술 개발의 의지를 주고 이것은 중소기업 간의 기술 개발 경쟁을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③ 수출 증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 중 31개에 달하는 수출 관련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대외 무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수출 증대의 효과로 이어 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은 국내중심에서 벗어나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에게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지금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4)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장애요인

정부는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행정 현장체험단'을 발족했다. 중소기업행정 현장체험단은 직접 중소기업을 방문한 뒤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당기업의 직원과 함께 애로사항 관련 담당기관을 방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향후 처리계획 등을 작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중소기업청이 분류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분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10명 미만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부터 수백명의 종사자를 거느리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분류 체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현재의 인력으로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제한 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을 관찰하는 주무부처로서 중소기업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기업의 분류 체계를 세밀화하고 규모에 따른 분류 외에도 다른 측면에서도 기업군을 분류하는 등 다차원적으로 중소기업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정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 및 애로사항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정책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은 수요를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자금지원 의 원활화일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선진국의 중소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영세하며 규모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자금의 조달이나 신기술 개발과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급자 위주의 지원체제로 운영한 정책자금은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III.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부는 지난 3~5년간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및 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개선노력은 지원절차상의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한 지원 및 운용체계 개선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된다.

1) 중소기업 지원기준 조정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업종의 특성과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역적인 사업체 수 분포나 규모의 불균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자금 이용 상황을 직접대출에 대한 현황을 보면 10인 이하의 기업은 1회가 85.8%를 차지하여 대부분 1회로 대출이 끝나고, 40명 이상의 경우 2회가 18.8%, 3회 이상이 8.0%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대출 회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리대출 또한 40인 이상 기업이 3회 이상 대출받은 기업이 30.4%로 높게 나타났다.

<표 8> 직접대출 회수 기업 규모별 비교

(단위 : %, 회)

	10명 미만	10명~20명 미만	20명~40명 미만	40명 이상
1회	85.8(79.3)	80.5(62.5)	77.6(61.8)	73.2(47.8)
2회	10.7(13.8)	12.6(21.9)	17.1(17.6)	18.8(21.7)
3회 이상	3.6(6.9)	6.8(15.6)	5.3(20.6)	8.0(30.4)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한국 주요경제 지표'(2007)

<표 9> 직접대출 금액 기업 규모별 비교

(단위: %)

	10명 미만	10명~20명 미만	20명~40명 미만	40명 이상
2억 미만	64.3	28.1	23.5	
2억 ~ 4억 미만	32.1	50.0	29.4	9.1
4억 이상	3.6	21.9	47.1	90.9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한국 주요경제 지표'(2007)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대출금의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뚜렷하여 10인 이하 기업은 64.3%가 2억 미만을 대출한 반면, 40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기업은 90.0%가 4억 이상을 대출하였다. 담보력이 있는 건설한 중기업에는 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소기업은 기회 부여가 적음을 알 수 있다.

2) 지원기관의 중복성 및 절차의 복잡성

<표 10> 정책자금의 개선 사항 기업 규모별

(단위 : %)

	10명 미만	10명~20명 미만	20명~40명 미만	40명 이상
복잡한 관련서류	23.9	21.1	22.2	20.9
부족한 대출금액	18.3	21.3	20.1	22.6
담보요구	14.6	15.9	15.9	17.8
심사시간 장기	10.0	8.8	9.6	7.3
복잡한 제도	8.9	7.8	8.7	8.0
낮은 심사 평가 능력	9.4	9.5	5.1	7.0
일부기업 중복 및 편중	7.7	7.1	6.3	5.9
높은 금리	4.0	4.3	5.4	4.2
지원기관 분산	1.7	1.9	4.2	4.9
기타	1.6	2.3	2.4	1.4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한국 주요경제 지표'(2007)

국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종류는 약 100여종이 있으며, 부처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자금의 성격이 중복성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자금의 사업목적,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식, 지원조건, 지원절차를 파악하여 신청 및 접수 하는 데는 중소기업의 행정력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이로 인한 금융컨설팅 기관 활용 등 대출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현행 정책자금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관련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대출금액이 적다는 점과 담보를 요구하는 점 등을 들었다.

3) 간접금융 조달편중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차입은 '은행자금'이 72.2%로 월등히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자금' 22.7% '비은행(제2금융권)금융기관' 2.8% 등의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할 때 증감폭이 크지는 않았으나 '정책자금'은 늘고(2.9%), '은행자금'(72.2%)과 '비은행(제2금융권)금융기관자금'(2.8%)은 미미하게(0.5%)줄었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94.9%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83.5%)보다 10% 이상 높아 은행 의존율이 더욱 심화되었다.

<표 11> 차입 외부자금의 조달비중

(단위: %)

	은행 자금	정책 자금	비은행 금융기관	주식	회사채	사채	해외자금 차입
2005년(A)	72.2	22.7	2.8	0.0	0.3	1.3	0.8
2004년(B)	72.7	19.8	3.3	0.6	0.3	3.1	0.2
증감(A-B)	0.5	2.9	0.5	0.6	0.0	1.8	0.6

주 : 금액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 주요경제 지표'(2007)

중소기업이 일반회사채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조달이 크게 축소되면서 간접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감소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에 대한 투자에 비하여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1인의 주주가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식을 지배하는 것이 보통인 중소기업에서 주주의 지위는 취약하다는 점이다.

셋째, 중소기업에 출자한 자금은 원하는 시기에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취약성을 투자업체도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에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된 중소기업의 사채보증 P-CBO/CLO 보증이 필요하다.

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투자촉진지원제도

중소기업은 금융지원 이용의 어려움, 대금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자금난, 자금회전의 장기화, 과중한 세부담 대기업 부도로 인한 연쇄부도 등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정부는 조세지원을 활용한 과감한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투자촉진지원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은 각종 준비금제도와 혼재하여 사용되므로 각종 준비금과 함께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 범위를 다소 상향하여 조정하거나 투자세액공제 하나로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세액공제도 20%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중소기업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은 중소기업제조업의 업종을 확대하여 모든 중소기업제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감면율도 현행 20%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창업활성화 지원

우리 중소기업의 실정을 볼 때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보다는 노동집약적인 기업이 대부분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혜택은 극히 제한된 기업에만 돌아가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창업 후 3~4년간은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결손이 발생하는 것이 현 실정이므로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은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과 활성화를 위하여 1986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제정, 공포하고 농어촌 지역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소득세 등의 국제감면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있다. 이중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농어촌 지역 및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만 국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바 이를 대폭 완화하여 새로 창업되는 모든 중소제조기업으로 확대하여 모든 중소제조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3) 기술 및 인력개발지원

기술이나 인력개발은 그 성격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중 기초과학과 이에 관련된 인력은 사적인 경제주체보다는 정부에 의해서 직접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투자나 이미 개발해 놓은 기술을 사업화 하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기술 및 인력개발은 개발단계에서 투자자본의 한계비용을 낮추춤으로써 개발투자를 크게 하는 정책, 또는 발명이나 특허 활용, 기타 기술 개발행위의 기대수익을 높이는 정책, 개발된 기술을 실제로 산업현장에 응용하는 단계에서 투자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등 기술개발의 실용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기술 및 인력개발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자본재 산업의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기술개발준비금은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인 통신산업 및 공업디자인 등에 국한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손금산입의 범위도 현행 수입금액의 3~5%에서 10%이상으로 확대하여 모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이나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산업구조조정지원

최근의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에 의해 산업기반이 취약한 기업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급기야는 도산을 맞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 자체의 구조조정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 간 구조조정의 노력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경쟁력이 강화된 중소기업을 유망산업으로 전환하고 이에 사업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지원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생력을 잃은 기업은 타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유망업종의 중소기업에 인력을

재배치하여 고용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조세지원이다.

산업구조조정지원과 관련한 제도로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세액감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감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재래사업자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사업전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지원제도가 있다. 이중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현재 양도소득세의 50%만을 감면하도록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대폭 상향 조정하여 그 감면의 폭을 넓히거나 또는 전액 감면하도록 하고 한시적인 기한도 외환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앞으로도 2~3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5) 협동화 · 공동화 지원

협동화 · 공동화 지원제도는 단지조성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사업원활화를 위한 지원제도가 있다. 이중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협동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감면의 폭도 80%이상 또는 100% 전액으로 대폭 늘려서 단지조성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6)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방이전준비금,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 있다. 농공단지 입주나 지방으로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감면세액도 현행 3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3년 이후 5년까지는 30%의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5년 까지는 전액을, 5년 이후 10년까지는 50%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 지역 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최적의 정책으로 여겨진다.

IV. 결론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고용과 수출 및 부가가치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안정과 소득의 균형배분을 통한 사회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정책적인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 중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 조세지원정책 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종류는 약 100종의 자금이 있으나 각 부처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성이 많아 정부의 의지대로 자금을 필요한 중소기업에 효율적으로 배분 및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에게 자금지원이 편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

원 받기 위해서는 그 지원절차를 파악하여 신청 및 접수 하는 데는 중소기업의 행정력으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절적소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중복성을 최소화 하고 절차상의 복잡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부처 간 이기주의의 극복과 정부시책 간 연계성 강화로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금융지원 이용의 어려움,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지원을 활용한 과감한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노동집약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혜택은 극히 제한된 기업에만 돌아가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등의 국세감면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를 지금보다 더 높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지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만 이들 지원제도들이 만족스럽거나 충분한 실효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그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가장 적합한 지원제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지원규모는 적지 않은 편이나 중복성과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구조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현실적인 지원보다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그 상황에 맞추어 집중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야로의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 즉,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경제와 서민경제와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접합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자금이나 조세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미래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신산업에 대한 정보지원이 중소기업에게 중요해졌다는 기업환경의 반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들을 살펴보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역의 균형발전, 고용기회 창출, 경제력 집중도의 완화 등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면 뿐 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의 부재, 소극적인 사회참여도 등 부정적인 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중소기업 스스로도 자신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국민경제와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환경 하에서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른 중소기업들과 차별될 수 있는 핵심역량을 발휘해 경쟁우위요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글로벌시대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에 대한 계획의 수립도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변화는 창의적인 기업문화의 정립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혁신에 의한

신기술과 신상품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시도를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여겨진다. 정부도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변화노력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한 기존의 성과분석의 경우 경제적 효과 추정 등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지원 혜택의 제공자인 정부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중소기업 스스로도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부나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깊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 한다면 선진국 진입을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논문접수: 2009. 10.12

수정보완: 2010. 06.01

게재확정: 2010. 06.10

참고문헌

- 강동수(2004), 중소기업의 부실현황 및 구조조정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고성삼(2000),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성삼(1998), “우리나라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7호, 261-293
- 김성호, 김판진, 나승화(2009), “벤처기업의 국제화 전략”, *유통과학연구*, 제7권 제3호, 101-122.
- 김현옥(2004),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송기남(1988),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형규(2001), “한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업종교류 활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규안(1997), “법인세부담의 공평성과 기업특성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1998~2007), 한국 주요경제 지표.
- Krugman, P(2000),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Nov-Dec.
- Quelin, Bertrand(1997). "Approachability and the creation of new capabilities through Strategic alliances" in *Strategic Learning and Knowledge Management*, John Wiley & Sons, Ltd, 152-153.
- Posner, Richard A(1975), "The Social Cost of Monopoly and Regu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3, 807-827.
- Waterson, M(1984), *Economic Theory of the Indus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rn, B. B., and M. H., Morris(1992), "Taxes and Firm Size: The Effect of Tax Legislation during the 1980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4(Spring), 80-96.
- Omer, T. C., K. H., Molloy, and D. A(1991), Ziebart,

"Measurement of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using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3(Spring), 57-72.

Shackelford, D. A(1991), "The Market for Tax Benefits : Evidence from Leveraged ESOP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4, 117-145.

Stickney, C. P., and V. E., McGee(1982). "Effective Corporate Rates : The Effect of Size, Capital Intensity, Leverage, and other Factor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I(Winter)*, 125-152.

Wilkie, P. J., and S. T., Limberg(1998). "Measuring Explicit Tax (Dis)Advantage for Corporate Tax Payer : An Alternative to Average Effective Tax Rate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0(Fall), 75-88.

Zimmerman, J. L(1983). "Taxes and Firm Siz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 119-149.

Abstract

A Study on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of SMEs

Chung, Young-Woo*, Kim, Pan-Jin**

This paper is to give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direction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through looking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about the government policy that domestic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essential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To derive these results, the theoretical background was established through considering the existing research literature. This paper has drawn the final policy alternatives through collecting field data and analysing the practical support after meeting with executives that are operating a small business related to research purposes.

In this paper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f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it is critical for the financial support policy and the tax support policy.

The conclusions in this study are following.

SMEs in Korean economic growth contribute greatly to advance industrial structur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to alleviate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However, there are these positive, and the negative such as the absence of entrepreneurial spirit and passive participation in society. Therefore, SMEs now should have your own a lot of effort to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In addition, government believe that SMEs directly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especially the people, but they still need systematic and aggressive policy support in the future because of the lack of the result.

Finally, if they try strategic approach for several issues and improvement of government's support policy that this study suggested for SMEs, the entrance toward developed countries can be through jumping of Korean economy.

Key Words : Medium Enterprises, Government Policy

* CEO, Hyundai Eng. Co., LTD

**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dang University